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3196
----------	------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의자 : 정인화 · 홍문표 · 진선미  
주승용 · 황주홍 · 윤영일  
최도자 · 이용주 · 김종회  
송기석 · 이동섭 · 박준영  
의원(12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3조).

신·구조문대비표